#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49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 박정하·진종오·서범수

이인선 · 이종욱 · 조은희

김재섭 · 신성범 · 김용태

조지연 · 조경태 · 김상훈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신고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게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처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 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등).

#### 법률 제 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9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전단 중 "수정한"을 "수정하는"으로, "24시간"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기존의 등급분류(게임물내용정보를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제5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게임물에 대해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게임 기의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게임물
- 2. 게임 결과에 따른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

2조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4항제2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제21조제7항"을 각각 "제21조 제9항"으로 한다.

제21조의10제3항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9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41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 내용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 정 등) ① (생 략) 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제9항---② 위원회는 제21조제7항에 따 | 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 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한다. 제21조(등급분류) ① ~ ④ (생 략) 제21조(등급분류)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u>수정하는</u>-----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 24시간---------. <u><</u>후단 삭제>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 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 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 이 기존의 등급분류(게임물내 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 용정보를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 는 제외한다. 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

- ⑥ 제5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게임물에 대해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 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로서 게임기의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게 임물
- 2. 게임 결과에 따른 재산상 이 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 으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 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 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 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 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 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 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 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 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 ⑦・⑧ (생 략)

-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 급분류 결정이 <u>제7항</u>의 등급분 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 류를 할 수 있다.
-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 ③ (생 략)
  -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대상 통보 및 조치

<u>⑨</u> · <u>⑩</u>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u> </u>
<u>제9항</u>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4
1 /코케키 기 ()
1. (현행과 같음)
2. <u>제2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u>

⑤ (생략)

-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저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 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등급분류를할 것. 다만, 제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 2. ~ 12. (생 략)
  - ② ~ ④ (생 략)
-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 제 소화) ①·② (생 략)
  - ③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등급 분류 결과가 제21조제7항의 등 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 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 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 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⑤ (현행과 같음)
세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1. 제21조제9항
71 مارح
<u>제21</u>
<u> 조제9항</u>
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
소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1조제9항</u>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 ⑥ (생 략)
-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 위원회는 제21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대상 통보 및 조치
  - 3. ~ 6. (생 략)
  - ②·③ (생 략)

제41조(수수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5. <u>제21조제5항</u>에 따른 게임물 5. <u>제21조제5항 및 제6항</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드) ①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2
1. ~ 4. (현행과 같음)
트 케이크 케트워 미 케요워

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	
재분류 대상인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